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10.14.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15.10.6.)

01 주요내용

-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으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직자의 실질적 지원 측면에서 실업급여액 수준 및 기간의 확대

- 실업급여액 지급 수준 : 실직 평균임금 50% → 60% 인상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90일~240일 → 120일~270일로 30일 연장
- 구직급여 상한액 : 43,000원/일 → 50,000원/일
-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 : 496만 3,000원 → 643만원으로 약 146만 7,000원 인상

-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의 관대화로 인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 등의 문제도 조정됨

- 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예정
 - 실업급여 자격 :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270일) 이상 근무
 - 구직활동 증빙은 월 1회에서 주 1회 또는 2주 1회를 제출하도록 하고,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한 번이던 것이 매주 한 번으로 강화
 -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동안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 으로 관리·감독 대상으로 분류
 - 실업급여 대상자가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삭감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지급되던 '조기 재취업수당' 은 폐지
-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
 - 현행 법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지급

02 시사점

- 자격기준 및 보장성 강화로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실업의 보호망에 있을 수 있으나 청년 아르바이트나 단기계약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 사각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2. 한국 노인복지 수준 96개국 중 60위, 전년대비 10위 하락

01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와 영국의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제5회 에이지 토크'를 열어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를 발표('15.10.12.)

- 한국은 44점을 얻어 60위를 기록, 작년(50.4점/50위) 대비 10위 하락

Global AgeWatch Index 2015 **대한민국 결과** 96개 국가 중 **60**위
점수: 44.0/100

- 영역별로는 소득보장 부문에서 24.7점을 얻어 최하위 수준인 82위였고 건강상태 부문은 58.2점으로 42위, 역량 부문은 47.6점으로 26위, 우호적 환경 부문은 64.1점으로 54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 : 노인의 사회, 경제적 복지 수준을 평가한 지표로,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4개 영역의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

영역	지표
소득보장	연금 소득 보장, 노인빈곤율, 노인의 상대적 복지, 1인당 국내총생산
건강상태	60세의 기대수명, 60세의 건강기대수명, 상대적 심리/정신적 복지
역량	노인의 고용률, 노인의 교육수준
우호적 환경	사회적 연결, 신체적 안전, 시민의 자유, 대중교통 접근성

- 특히 소득보장 부문과 우호적 환경 부문 점수는 아시아 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1%)보다 4배 이상 높아 소득보장 영역이 최하위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세계노인복지지표 1위 국가는 스위스였고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 순이며, 미국은 9위에 랭킹
 -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위), 키프로스(30위), 태국(34위), 베트남(41위), 스리랑카(46위), 필리핀(50위), 키르기스스탄(51위), 중국(52위), 타지키스탄(58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앞섬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1%)보다 4배 이상 높아 최하위수준의 소득보장이 최하위수준임 뒷받침
- GAWI의 데이터 및 측정방식은 우리의 노인복지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 한계가 있음
 - GAWI는 소득보장부에서 연금소득보장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 특성상 '소득빈곤률' 보다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순가치 빈곤율'로 계산되어야 자료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음
 - GAWI는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노인복지 상황을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 예) 상대적 심리/정신적 복지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Gallup이 설문조사한 자료 / 연금소득보장은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복지 수준 측정 자료로 활용

02 시사점

- 낮은 노인복지수준으로 인해 노인의 행복지수도 하위 수준(4.2점/10점)인 것으로 조사된 바, 노후에 직면하는 비복지적 상황을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
 - 노인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등 사고(四苦)로 인한 노인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수당

최근 청년들의 고용·주거·경제 불안 문제가 심화되어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

- 기존의 청년 대상 지원제도들은 공급자·프로그램 중심이 대부분으로, 당사자의 체감도가 낮고, 실효성 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존재
 - 최근 실시한 청년대상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 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9%가 '실효성 없다' 라고 답했고, '실효성 있다' 는 응답은 1.9%에 불과
- 최근 청년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성남시가 시작하였고, 서울시가 청년수당(배당)지원제도 도입을 준비 중임

성남시는 기본소득(Basic Income) 관점*의 '청년 배당제'를 추진 중이며 지난 1일 설명회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
 서울시의 '청년 활동 수당제'는 청년단체 등이 지난 8월 포럼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청년보장 (Youth Guarantee) 내용의 하나로, 현재 서울시는 세부내용 확정 및 내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임

- 청년층에 현금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나라는 프랑스·독일·호주 등
 - 대부분의 청년수당제도는 지원 목적을 단순한 사회적 투자 또는 취업활동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청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및 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두고 있음
- 국·내외 사례 비교

구분	성남시(안)	서울시(안)	프랑스	독일	호주
명칭	청년배당제	청년활동수당제	알로카시옹 (현금수당)	바뵈크 (생활비 지원)	청년수당
성격	보편	선별	조건부 (구직활동 이행)	부분 지원 (50% 본인부담)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목적	청년층 권리증진	저소득청년 지원	자립·자활 도모	경제부담 완화	경제부담 완화
대상	만19~24세 청년 (11,300명)	저소득가구 청년 (3,000명)	18~26세 청년	대학생	16~24세 청년
내용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6~8개월간 월 50만원	월 57만원	월 100만원	월 20~60만원
형태	지역화폐	현금	현금	현금	현금

-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의 알로카시옹과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II) 사업 진행중. 즉, 만 18~34세 청년에게 상기 사업 참여수당 월 20만원, 취업훈련 지원금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청년수당(배당)제 도입은 청년층의 기본권 보장과 이에 맞선 포퓰리즘 논란·예산낭비 우려 등이 쟁점화 되고 있음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10. 31.(토) 10:00~17:00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메인스타디움 • 주 최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대 상 : 도내 사회복지사, MOU체결 학교 예비사회복지사 1천 명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8~9월 전국 대학생 1412명에게 실시

*기본소득 관련 내용은 본지 7호 참조

03 FACT CHECK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실효성 있나?

- 보건복지부는 복지제도의 효율성·형평성 증진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15.10.13.)
 - 부정수급자, 불법·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법인 및 단체, 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사업자 등을 복지 부정수급 신고대상자로 하고, 이를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익신청 등 제반 절차를 규정
- 이로 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 전 복지사업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
 - 특히 부정수급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행정력 낭비 개선 효과
- 반면, 기존 제도와의 중첩성과 신고의 실효성 문제가 존재
 - 기존의 다양한 신고포상금제 및 공익신고제도가 사회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관리 체계상의 실효성이 문제
 - 복지부정에 대한 내용은 내부자 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대부분이나, 내부자들은 3차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과정 상의 신분 노출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임
- 부정수급 조사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격리조사나 대리인제 실시 등 신분 보장 대책 마련과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복지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민감성 및 감시 기능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04 통계로 보는 복지

노인 진료비와 다발성 질병 순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건강보험 통계 연보

- 최근 발표된 2014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의하면, 65세 이상 환자 수는 전체 대상의 11.9%를 차지하는 반면, 진료비는 36.7%에 이룸
 - 노인 1인당 진료비는 339만4천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 108만5천원의 3배 이상임
- 노인의 다발성 질병 1위는 본태성(1차성)고혈압으로 진료환자 수가 237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진료비도 1조2414억 원으로 집계되어 2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1429억 원의 11.5배임
-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의료재정 효율화를 위해 예방 차원의 맞춤형 건강관리 방안이 요구됨

1) 단위: 천 명, %
2) 단위: 천 원, %